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전금 용어를 보상금으로 변경〉

■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90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상 용어 “보전금”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u>보전금</u>) (생략)	제45조(<u>보상금</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생략)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부담금· <u>보전금</u>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② ----- ----- <u>보상금</u> ----- ----- ----- -----.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 ③ (생략)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u>보전금</u> 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④ ----- ----- <u>보상금</u> ----- -----.

□ 보전금은 법 제45조의 제목으로, 제45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개정안은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이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군인연금 보전금이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용어를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 현행 법률에서 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해보면, 주요 공적 연금법 중에서 보전금을 규정한 대표적인 입법례는 「군인연금법」 제45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71조임.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의 보전금 규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45조(<u>보전금</u>)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71조(연금부담금 및 <u>보전금</u>) 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 <u>보전금</u>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보전금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¹⁾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임.

연금지급액 대비 연금기여금 및 부담금 수입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군인연금은 현행 보전금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출금²⁾(군인연금기금 측면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형태로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대규모 수입 확보를 통해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의 군인연금에 대한 보전금은 2024년 2조 1,083억 7,100만원이고, 2025년 예산안은 2조 3,496억 6,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보상금을 규정한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상금³⁾과 국방부

1) 「군인연금법」 제1조 목적

2) 예산상 프로그램은 81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단위사업은 8101 회계기금간전출, 세부사업은 882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임

3)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④ (생략)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소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상금⁴⁾임.

- 이와 같이 보전금과 보상금의 대표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면, 보전금은 공적 연금의 자체적인 주요 수입인 기여금 및 부담금 등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국가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공적 연금기금의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회계·기금간 거래를 의미하는데 반해,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⁵⁾ 등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국가가 국가유공자 또는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보전금은 회계·기금간 거래를 통한 연금수입 확보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입법례와 용어의 일관성이 있고, 현행 군인연금의 보전금이 국가유공자 또는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 아닌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 공적연금법인 「공무원연금법」 및 관계 법률의

령령으로 정한다.

4)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보전금 용어의 입법례 및 일관성 측면, 현행법의 보전금 규정에 따른 국가의 대규모 보전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목숨을 담보로 한 임무 수행, 긴장태세 유지, 격오지 근무 및 잦은 이사 등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나타내는 “보상금”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보전금은 연금 재원 부족시 국가가 사용자로서 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전금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감안시, 보전금 용어 유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4